

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한 최근의 사례 고찰*

하 강 현**

-
- I. 서 론
 - II. 대금지급의무 및 관련 사례분석
 - III. 물품수령의무 및 관련 사례분석
 - IV. 결 론

주제어 : 매수인의 본질적 계약위반, 대금지급의무위반, 물품수령의무위반,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즉시해제, 최고후 해제

I. 서 론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방당사자가 당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을 범하게 되면 피해당사자는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 본 논문은 영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영산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부교수, khha@ysu.ac.kr, 010-3897-6649

된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히 갖는 권리이며, 당해 위반의 정도가 본질적 계약위반¹⁾인 경우에만 즉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그 위반의 정도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피해당사자는 위반당사자에게 부가기간을 설정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촉구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흔히 이를 최고후 계약해제라 부른다. 즉시에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위반당사자가 범한 위반이 본질적인 것이어야만 하는데, 국제물품매매법²⁾ 제25조에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범한 계약위반은 그것이 그 계약하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정도의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본질적이다」라고 본질적 계약위반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과연 어떠한 정도의 위반이 「상대방의 기대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인지, 다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놓았기에 국제물품매매계약당사자가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아니하다. 매수인은 종종 매도인이 제공한 물품에 부적합이 발견되거나 지체된 인도를 하는 경우에 자신이 지급해야할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또는 물품을 수령하지 않거나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기도 한다.

그 동안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하강헌(1998),³⁾ 석광현,⁴⁾ 홍성규⁵⁾는 본질적 계약위반의 정의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하강헌(2003)⁶⁾(2005)⁷⁾은 본질적 계약위반이 적용된 사례연구를 하였고, 하강헌

1) 전자는 즉시 해제, 후자는 최고후 해제라 부른다.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CISG 또는 국제물품매매법이라 약칭한다. 본고에서 범명 표기 없이 조항만 표기된 것은 전부 CISG(국제물품매매법)를 의미한다.

3) 하강헌,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근본적 계약위반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1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8년.

4)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경제연구, 제23집 제2호, 한양대학교, 2006년.

5) 홍성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본질적 계약위반의 효과”, 무역연구, 제6권 제4호, 한국무역연구원, 2010년.

6) 하강헌. “근본적 계약위반조항의 적용사례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1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3년.

7) 하강헌, “CISG하의 매수인의 계약해제 사례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2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년.

(1998)⁸⁾(2008)⁹⁾은 본질적 계약위반조항이 적용된 이행기전의 계약해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사례연구를 하였고, 오석웅¹⁰⁾은 매수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론적인 고찰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므로 본 조항이 적용된 법원판결 및 중재판정 등 그 사례를 면밀히 분석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매수인이 자신의 주된 의무 즉, 대금지급의무 및 물품수령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분석하여, 피해를 입은 매도인이 계약해제권의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대금지급의무 및 관련 사례분석

1. 대금지급의무

(1) 매수인의 주요의무

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의 주요의무는 물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 및 인도된 물품을 수령할 의무이다. CISG 제53조에서는 「매수인은 계약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라고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관련하여, CISG에서는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의무(제54조), 대금불확정계약에서의 대금확정방법(제55조), 순량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한다는 원칙(제56조), 대금지급장소의 결정방법(제57조), 대금지급시기의 결정방법(제58조) 및 매도인에게 어떠한 요구 없이 매수인은 지정기일에 대금을 지

8) 하강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이행기전의 계약해제에 관한 고찰”, 국제거래법연구, 제7집, 국제거래법학회, 1998년.

9) 하강현, “국제물품매매에서 이행기전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권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년.

10) 오석웅, “CISG에 있어서 본질적 계약위반과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무역연구, 제6권 제4호, 한국무역연구원, 2010년.

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 조항(제59조) 등 총 6개조의 세부조항을 둘 만큼,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는 대금지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 즉 대금지급 조치의무도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계약에서 약정한 L/C의 개설도 포함된다.¹¹⁾ 매수인의 물품수령의무와 관련하여서도, CISG에서는 제60조에서 세부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인도된 물품을 수령할 의무와 함께 그 수령을 위해 필요한 예비적 행위를 매수인이 이행해야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매수인의 대금지급 조치의무

매수인의 대금지급 조치의무와 관련하여, CISG 제54조에서는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지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이나 또는 관련 법규하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금지급 조치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일부로서 매우 중요한 의무이다. 본 조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대금지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취하여야 할 행위, 예를 들어, L/C의 개설, 은행보증서 발행, 외화사용허가, 수입승인 등 외화의 사용이나 대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모든 예비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포함한다. 만일 매수인이 이러한 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면 이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이 되고 사안에 따라, 이 자체가 본질적 계약위반에 상당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이는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정지하는 이행정지권(제71조)¹²⁾ 행사의 근거가 된다. 매수인의 대금지급 조치의무의 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상당하지 않더라도, 매도인은 부가기간을 설정 통지한 후 매수인의 불이행시에 최고후 해제

11) 신용장개설 및 은행의 보증서 발행 등도 대금지급 조치의무에 포함된다. Schweng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3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813.

12) CISG 제71조에서는 상대방의 이행능력 또는 신용도의 중대한 결함 혹은 계약의 이행을 준비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 등의 문제로 의무의 실질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이행정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행정지권의 행사요건 및 효과에 관하여는, 하강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이행정지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23권 2호, 한국무역학회, 1998, pp.296-306. 참조. 이행정지권의 적용사례에 관하여는, 하강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이행기전 계약위반에 관한 구제권 연구” 전계논문, pp.8-12. 참조.

권을 사용할 수도 있다. 요약하면, 매수인의 대금지급 조치의무의 위반은 매도인에게 이행정지권 행사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최고 후 계약해제의 근거가 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그 자체가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여 매도인에게 즉시 계약해제권을 부여해줄 수도 있을 만큼 매수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행의무라 할 수 있다.

(3)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CISG 제53조에서는 매수인에게 물품의 대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를 천명하고 있지만, 제59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대금지급의무와 지급요구의 불요성) 매수인은 계약과 본 협약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또는 이로부터 결정될 수 있는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 매도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요구를 하거나 어떠한 의식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조의 규정목적은 확정되었거나 또는 확정될 수 있는 기일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 측면도 있지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거나 어떠한 절차를 빌미로 대금지급을 지체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물론 확정된 이행일자에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으로써 연체이자를 배상하여야 한다.¹³⁾

그런데 매도인이 매수인의 어떠한 요구 또는 절차에 따를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내용은 일부 국내법상의 규정과 상충되어 혼란을 야기 시키기도 한다.

13) CISG 제78조에서는 연체된 금액에 대한 이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CISG에서는 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적용이자율의 결정기준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 보면, 이자율의 결정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판례를 보면, 적용 이자율의 결정 기준은 다양하다. ICC 중재판정소의 한 판정에서는 이자율은 LIBOR + 2%로 결정되기도 하였다. Schwenger I., Fountoulakis C., *International Sales Law*, Routledge-Cavendish, 2007, p.559. 이자율 지급기준은 ① 채권자국의 법정 이자율 ② 은행간 평균 대출이자율 ③ 채무자국의 법정이자율 ④ 계약 준거법국의 법정 이자율 ⑤ 지급지국의 법정이자율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Goode R., *Transnational Commerci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305. 반면에 Bonell은 PICC 제7·4·9조 2항에서 규정한 이자율 적용기준(지급지에서의 은행간 단기 대출이자율)이 국제매매에서 가장 적합한 기준이라고 보고 있다. Bonell M. J., *The Unidroit Principles in Practice*,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2002, p.336.

예를 들어 프랑스 민법(제1139조)에서는 모든 종류의 채무에 대해 공식적 이행청구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CISG는 이러한 공식적 이행청구를 거절하는 것이다.¹⁴⁾ 본 조항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매도인이 송장을 매수인에게 송부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본 조는 대금지급기일에 매수인이 절대적으로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대금지급장소의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CISG 제57조에서는 「(1) 매수인이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에서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b) 대금이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가 이루어지는 장소. (2) 매도인은 계약체결후에 자신의 영업소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금지급에 대한 부수비용의 증가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 제1항 a호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대금지급장소가 미합의된 경우에 매도인의 영업장소를 대금지급장소로 규정하고 있지만,¹⁵⁾ b호에서는 대금이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나 물품의 교부장소가 대금지급장소가 된다고 규정하여 a호의 예외를 b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매도인의 영업소 변경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비용부담을 매도인이 하여야함을 규정한 것으로,¹⁶⁾ 이는 일방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야기시킬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¹⁷⁾

14) Honnold J. O.저 (오원석 역), UN통일매매법, 삼영사, 2004, p.472.

15) 매도인의 영업장소를 대금지급장소로 규정한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입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errari F., Flenchtner H., Brand R. A., *The Draft UNCITRAL Digest & Beyond : cases & unresolved issues in the U.N. Sales Convention*, European Law Publishers, 2004, pp.427-428.

16)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04(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04, 이하 'PICC'라 칭함) 제6.1.6조 2항에서도 CISG와 동일한 취지로 규정을 두고 있다. 영업장소를 변경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기일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추가 발생한 비용은 변경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Vogenauer S., Kleinheisterkamp, J., *Commentary on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PICC) II*,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653.

17) CISG 제80조에서도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대방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

대금지급장소는 매도인의 영업소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류교환장소가 매수인국이거나 거래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경우 등에서는 매수인의 영업소가 대금지급장소로 결정되기도 한다.¹⁸⁾ 하지만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금지급장소의 문제로 매수인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범한 사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문제는 대금지급기일에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 발생한다.¹⁹⁾

대금지급시기와 관련하여, CISG에서는 제58조에서 「(대금지급시기) (1) 매수인이 다른 어떤 특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 및 본 협약에 따라 물품이나 또는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이러한 대금지급을 물품 또는 서류의 인도에 대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대금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물품이나 또는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가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그가 물품을 검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는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된 인도절차 또는 지급절차가 매수인이 이러한 기회를 가지는 것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 규정은 매수인에게 손해(이자의 손해도 포함)배상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다. Schlechtriem P., Schweng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Seco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633.

18) 대금지급장소의 결정문제에 관한 사례 연구로는, 하강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대금지급장소조항의 적용사례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4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 pp.111-117. 참조.

19) 대금지급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로는 지급 통화의 결정문제가 있다. 계약상 지급 통화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통화를 결정하는 방식에 관하여 CISG에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대금지급 장소에서의 통화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적용가능한 국내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Schlechtriem P., Schwenger I., op. cit., pp.622-623. 하지만 지급통화의 결정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PICC에서는 대금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환율도 실제 지급시 통용되는 환율로 지급하여야 한다. Bonnell M. J., op. cit., pp.221-222 참조.

제1항에서는 약정된 대금지급기일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 또는 물품처분서류가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게 될 때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물품과 대금은 동시에 교환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계약상 대금지급기일이 약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당해기일에 지급해야 한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밝힌 물품과 대금을 동시에 교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국제매매의 특성상 자주 사용되는 상징적 인도조건(CIF, CIP, CPT)을 고려하여, 매도인이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와 교환으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항이다. 보통 국제매매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B/L)를 운송인으로부터 발급받아 은행을 통하여 L/C 또는 추심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 때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도인은 그 처분지배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은행 또는 운송인을 통하여 그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²⁰⁾

제3항에서는 물품의 인도 또는 지급의 절차 등에 있어, 매수인이 물품검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검사 후 대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제매매에서 매수인이 선적전 검사를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검사를 실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만일 매수인이 물품인도 후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품을 검사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특별한 약정을 할 필요가 있다. 대금지급시기는 약정된 지급기일-물품(서류)와 대금 동시 교환-물품검사 후 대금지급(특별약정)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대금지급의무와 관련된 사례분석

(1) 정부의 수입제한을 이유로 L/C를 개설하지 않은 이유²¹⁾

20) 만일 매도인이 그 물품처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도인은 운송인을 통하여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Flechtner H. M., Brand R. A., Walter M. S., *Drafting Contracts Under the CISG*,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424-425 참조.

21) CLOUT Case 976 : China: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CISG/2003/10, 26 June 2003.

① 사건개요

홍콩의 매도인(신청인)은 1001년 9월 19일 알루미늄 3만톤을 중국의 매수인(피신청인)에게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금 결제는 신용장방식으로 하도록 약정하였다. 그런데 계약체결후 매수인은 중국정부가 알루미늄의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L/C를 개설할 수 없다고 통지해왔다. 이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범한 것이라고 보고, 동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고, 매수인을 상대로 대체거래와의 차액, 예상이익의 손해액, 이자 및 중재비 등 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 반면에 매수인은 중국정부의 수입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L/C 개설하지 못한 것이며, 이는 불가항력적 사유이므로 CISG상의 면책사유(제79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② 판정내용

중재판정부는 심문과정에서 중국정부의 수입제한규정이 알루미늄의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수인은 자신의 의무이행을 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매수인의 L/C 개설 실패는 계약의 본질적 위반이라고 보았다. 또한 매도인이 제3자에게 재매각한 것은 손해경감의무(제72조)에 따라 행한 적절한 조치였기 때문에, 대체거래와의 차액(제75조)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고, 예상 이익의 손실도 배상금액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매도인의 이자손실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③ 판정의의

매수인이 L/C 개설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은 매수인의 대금지급 조치의무(제54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된다. 매수인이 주장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가 되기 위해서는, 수입국 정부가 당해 물품의 수입을 완전히 금지시키고 경우이어야만 해당 될 것이다.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계약의 이행(수입)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2) 시황변동을 이유로 L/C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²²⁾

① 사건개요

합성수지원료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B/L 개설 후 90일 이내에 매도인이 nego할 수 있는 조건으로 취소불능신용장을 매도인에게 개설해 주도록 하는 대금지급조건을 포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인은 2월 중에 선적하고 L/C는 2월 18일 이전에 개설하도록 약정하였지만 계약체결후 합성수지원료의 시장가격이 하락하게 되자, 매수인은 시황변경을 사유로 L/C 개설을 거부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선적을 연기하고 매도인에게 L/C 개설일지도 연기해주었다. 그러나 매수인은 계속 가격인하를 요구하면서 L/C를 개설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동 원료는 고온에 장시간 있게 되면 변질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인의 손해를 경감시키고자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본질적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제를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

② 판정내용

중재판정부는 본 사건에서의 매수인은 매수인의 의무(제53조), 대금지급조치의무(제54조) 및 대금지급의무(제59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을 기초로 하여 정당하게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였다고 판정하였다.

③ 판정의의

국제매매에서 계약체결후 시장가격이 하락하면, 종종 매수인은 이미 합의된 가격의 인하를 요구하거나, 이를 사유로 물품수령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79조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매수인의 계약위반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장가격하락을 「Impediment beyond buyer's control(매수인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로 인정한 판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계약체결후 시장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매수인은 자신의 주된 의무인 물품수령의무 및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자신의 더 큰 손실을 막는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22) CLOUT Case 986 : China: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CIETAC), CISG/2002/03, 4 February 2002.

(3) 경영진 교체 후 L/C 개설을 거부한 경우²³⁾

① 사건개요

말레이시아의 매수인(피고)은 호주의 매도인(원고)으로부터 고철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금지급을 위하여 취소불능신용장을 매도인에게 개설해줄도록 약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계약체결후 매수인 기업의 경영진이 교체되어 전담경영위원회가 경영을 하게 되었는데, 본 경영진은 매도인에게 L/C를 개설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계약의 해제를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호주법원에 매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② 판결내용

호주법원은 매수인의 L/C 개설거부는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한다고 보고, 매수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③ 판결의의

매수인이 부당하게 L/C 개설을 거부하는 것은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게 되므로, 이는 계약해제의 사유에 해당된다. 문제는 매수인이 L/C 개설을 거부하지는 않으면서, L/C 개설을 지체하는 경우에 이것도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L/C를 입수하지 못하여 물품의 준비 및 선적에 지장을 받게 되고, 이러한 지연(지장)이 매도인에게 심각한 손해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L/C 개설을 위한 부가기간을 설정 통지한 후 동 부가기간에도 L/C를 개설하지 못한다면, 최고후의 계약해제 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한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최초의 L/C 개설실패를 기초로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는 것은 정당한 계약해제로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본다.

23) CLOUT Case 631 : Australia: Supreme Court of Queensland 10680 of 1996, Downs Investments Pty Ltd. v. Perwaja Steel SDN BHD, 17 November 2000.

(4) B/L 미수령을 이유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²⁴⁾

① 사건개요

중국의 매수인(피신청인)은 한국의 매도인(신청인)으로부터 art paper 수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국으로 항해하던 선박이 침몰하여 물품이 멸실되자, B/L을 미수령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 본 사건에서 물품에 대한 위험은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거래조건이었다. 매수인은 서류불일치는 대금 지급거절 사유가 된다고 항변하였다.

② 판정내용

중재판정부는 본 사건에서의 매도인은 제67조하의 물품운송의무를 이행하였고, 서류의 불일치가 있어 L/C 유효기일 내에 대금을 수취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또한 운송 중 물품 멸실이 매도인의 작위(제80조)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물품 멸실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판정하였다. 매수인이 항변한 매도인 서류의 불일치가 본질적 계약위반에 상당하다는 주장은 중재판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계약해제권이 없으며, 매수인은 물품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③ 판정의의

종종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공한 서류가 계약에 불일치하는 경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서류의 제공이 계약의 본질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본 사건에서와 같이 매도인이 물품인도의무를 정당하게 이행하였다면, 반대로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L/C 유효기일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결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본 사건에서의 매수인은 물품이 운송 중 멸실되

24) CLOUT Case 864 :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25 June 1997.

자 서류불일치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는데, 이는 매수인이 국제매매에서의 위험이전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선적항에서 물품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상태이므로, 매수인은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일 물품의 멸실 원인이 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면, 매수인은 보험자를 상대로 멸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²⁵⁾

(5) 이전 주문분의 대금지급을 지체한 경우²⁶⁾

① 사건개요

싱가폴의 매수인(원고)은 독일의 매도인(피고)으로부터 2002년 7월에서 2003년 10월 사이에 몇 종류의 차량을 수입하기 위하여 구매주문을 몇 차례 하였다. 대금지급조건은 매도인이 차량 선적준비를 통지하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매수인은 첫 번째 주문분의 대금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매도인은 수차례 부가기간을 설정하여 대금지급을 독촉하였다. 매수인은 첫 번째 주문분에 대한 대금을 몇 차례 분할하여 지급하였는데, 2003년 10월에 그 지급을 완료하였다. 첫 번째 주문분에 대한 대금지급이 완료된 2003년 10월에, 매도인은 첫 번째 주문분을 포함한 매수인과의 전체 계약에 대한 해제를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자신의 이익손실분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자신이 지급한 대금의 상환을 청구하는 소를 독일 법원에 제기하였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설정한 부가기간은 6개월이나 되었다.

② 판결내용

독일의 항소법원은 본 사건에서 매수인이 첫 번째 주문분에 대한 대금지급을 지체한 사실 및 매도인이 설정한 6개월의 부가기간은 적절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특정계약에 대한 대금지급을 지체한 것을 사유로 다른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첫 번째 주문에 대한 대금지급은 완료

25) 만일 보험으로도 커버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멸실에 대한 위험은 고스란히 매수인이 지게 된다. 물품대금을 바다에 수장시킨 꼴이 된다.

26) CLOUT Case 826 : Germany: Oberlandesgericht Munchen 23 U 2421/05, 19 October 2006.

되었고, 두 번째 주문분에 대한 대금지급은 아직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매도인은 제64조하의 계약해제권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제81조 2항하에 자신이 지급한 첫 번째 주문분에 대한 대금을 상환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③ 판결의의

본 사건에서의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지체한 것을 사실이나, 이전 계약분에 대한 대금지급 지체를 근거로 장래 계약분에 대한 대금지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CISG의 규정상으로는 장래분에 대금지급이 지체될 것으로 예견된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계약의 해제를 인정할 만큼 계약해제를 가볍게 다루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매수인이 일부 대금지급을 지체한다고 하여, 전체 계약의 해제를 쉽게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6)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L/C조건을 변경한 경우²⁷⁾

① 사건개요

중국의 매수인(피고)은 아연 도금된 강철코일 2,000톤을 독일의 매도인(원고)으로부터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급은 L/C거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약체결후 매수인은 L/C를 개설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였는데, 그 L/C 조건중에는 계약체결시 합의하지 않았던 조건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에도 매수인은 1,000톤씩 2개의 계약으로 또 그 계약도 각 500톤씩 2개의 B/L의 발행을 요구하는 등 매도인의 동의 없이 L/C상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여 L/C 변경 통지를 해왔다. 이에 매도인은 물품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매수인에게 대체거래와의 차액을 지급토록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

② 판정내용

동 사건을 맡은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L/C조건을 변경한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매수

27) CLOUT Case 716 :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16 December 1997.

인이 대체거래와의 차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도록 판정하였다.

③ 판정의의

매수인이 L/C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가 언제나 본질적 계약 위반을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그러한 변경된 조건이 당해 계약의 본질을 어느 정도 훼손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소한 변경이나 매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본질적 계약위반에 상당하다고 본다면, 이는 오히려 국제무역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CISG의 입법의도를 감퇴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본 사건 중재판정부가 대체거래와의 차액을 매수인이 배상하도록 판정한 것은 사실상 계약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7) 수량 부적합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정지한 경우²⁸⁾

① 사건개요

미국의 매수인(피고)은 스위스의 매도인(원고)으로부터 미국시장에서의 독점대리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롤러 베어링을 계속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양 당사자는 2년간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잘 이행하였다. 하지만 2년 후 매수인은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에 수량부적합이 발견되고, 물품인도도 지체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을 정지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스위스 법원에 제기하였다.

② 판정내용

본 사건을 심리한 스위스법원은 수량부적합의 경우에는 제51조(물품일부의 부적합)에 의거 매수인이 구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 인도된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을 정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제71조에 의거 이행정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는 장래의 예상되는 계약위반에 적용하는 조항이므로, 이는 기 인도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물품의 지연 인도에 관해서도, 매수인은 부가기간을 설정한 후에도 매도인이 불이행하

28) CLOUT Case 630 : Switzerland,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Zurich, ICC Arbitration Case No. 9448, July 1999.

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물품인도의 지연을 사유로 자신의 대금지급의무를 정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법원은 부당하게 대금지급의무를 정지한 매수인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③ 판결의의

수량부적합의 정도가 계약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사유로 대금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50조에 의거 부족한 수량만큼 그 비율대로 대금을 감액하거나 매도인에게 추가 인도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제71조에서 규정한 이행정지권은 장래에 예상되는 위반에 적용되는 것이며, 기 이행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조항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8) 제3자를 통한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²⁹⁾

① 사건개요

매수인(피신청인)은 모자를 수입하기 위해 매도인(신청인)과 14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수인은 동 물품의 수입시 운송비와 관세지급 및 통관수속을 의뢰한 제3자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도록 매도인과 약정하였고, 처음에는 제3자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에는 매도인의 수 차례의 지급요청에도 불구하고, 몇 몇 건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과 체결하였던 추가 계약을 취소하고, 매도인의 고객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을 상대로 미불금 지급청구를 위한 중재를 신청하였다.

② 판정내용

중재판정부는 본 사건에서의 매수인은 제53조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제25조하의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매도인은 제74조에 의거 손해배상권을 갖게 되며, 또한 제78조에 의거 연체된 대금에 대한 이자청구권도 갖게 된다고 밝히면서, 피신청

29) CLOUT Case 983 : China: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CISG/2005/02, 10 May 2005.

인인 매수인에게 패소판정을 내렸다.

③ 판결의의

본 사건에서의 판정은 당연한 결과이다. 다만 제3자를 통한 대금지급과정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매수인은 가능하면 직접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³⁰⁾

(9) 분할대금지급을 정지한 경우³¹⁾

① 사건개요

미국의 매도인(원고)은 2인 매수인과 플라스틱 원예용 화분을 제작하는 설비를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 중 1인은 그리스인(피고)이었다. 그 설비는 미국 매도인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매우 복잡하게 제작되는 것이었다. 대금은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었다. 그리스의 매수인은 그 설비를 수령 받은 후, 매도인이 경쟁금지합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매도인 상대로 타 매수인에 대한 물품판매 금지명령(injunction)을 청구하였다.³²⁾ 또한 매도인에게 분할대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② 판결내용

본 사건을 심리한 미시건 서부지방법원은 경쟁금지합의상의 지역구분이 불명확하므로 물품판매 금지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분할분의 대금지급을 거절한 매수인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범하였다고 보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30) 본 사건에서의 제3자는 운송비 및 관세를 지급하고 통관수속을 대행하는 업체(포워딩업체)로 여겨지며, 동 업체는 운송비 및 관세는 지급하고 물품을 수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31) CLOUT Case 578 : United States: U.S. [Federal]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Michigan; No. 1:01-691, Shuttle Packaging Systems, L.L.C. v. Tsonakis, Ina S.A. and Ina Plastics Corporation, 17 December 2001.

32) 자신 이외의 다른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경쟁금지합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제2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여겨진다.

③ 판결의의

본 사건에서의 계약내용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장비의 운전을 위한 훈련 및 부작동시 정상 작동때까지 수리한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물품 및 그 사용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물품 자체에 대한 부적합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다른 매수인에게도 판매한 것은 경쟁금지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계약에는 그러한 지역의 구분이 정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고 보지 않은 것이다.

Ⅲ. 물품수령의무 및 관련 사례분석

1. 물품수령의무

매수인의 물품수령의무와 관련하여, CISG에서는 제53조에서 물품의 인도를 수령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제60조에서는 「(매수인의 인도수령의무) 매수인의 인도수령의무는 다음과 같다. (a) 매도인이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 및 (b) 물품을 수령하는 것」이라고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인도수령의무는 동시 이행적이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물품을 최초의 송인에게 인도한 시기에 매도인의 인도는 이행된다(제31조). 매수인이 운송을 수배하는 경우라면, 매수인이 수배한 운송인이 매수인을 대리하여 물품수령을 이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매도인이 운송을 수배한 경우라면, 물품인도의무와 물품수령의무가 동시에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국제매매의 특성으로 인한 시차적 공백이 발생한다. 그러한 경우 매수인은 도착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 자신의 물품수령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본 조 1호에서는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제반 예비적 조치 또는 준비를 할 의무를 매수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승인 또는 허가를 받지 못하여 물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하

여야 한다.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 그것에 관한 준비도 마땅히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한다.³³⁾

그러면 매수인의 물품수령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해진다. 물품의 수령이 지체되면 운송인은 체선료 또는 컨테이너 터미널 사용료 등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더욱 중요한 문제는 수령이 지체되는 기간에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CISG에서는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해야 함을 규정(b호)하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수령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CISG의 입법 정신중 하나는 합리성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매수인은 물품인도 후 합리적인 기간내 물품을 수령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³⁴⁾ 그러면 그러한 수령기간내에 매수인이 물품수령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매수인의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상당하는지 궁금해진다.³⁵⁾ 계약에서 물품의 수령이 매우 중요함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 한, 물품수령을 지체한 것 자체만으로 매도인이 즉시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은 부가기간을 설정하여 최고통지를 매수인에게 발송한 후 최고 후 계약해제의 모듈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33) 가령, 물품인도장소가 매수인의 영업장소라면, 매수인은 물품인도에 적합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고 또한 매수인은 그 장소로 접근 가능하도록 조치해야하며, 만일 물품수령에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그 장비도 설치하여야 한다. Ferrari F., Flenchtner H., Brand R. A., op. cit., pp.739-740.

34) 인도 물품의 수령은 즉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한 수령의무의 이행은 창고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물품서류의 수령, 그 외에는 물리적인 수령을 의미한다. Kröll S., Mistelis L., Viscasillas p. P.,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C.H.Beck·Hart·Nomos, 2011, p.850.

35) 본질적 계약위반에 상당하지는 않다하더라도, 물품이 인도된 후 매수인의 수령지체로 또는 실패로 인하여 물품이 재해를 입는 경우 그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CISG 제86조에서 매수인의 물품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보아도 매수인의 물품수령의무 이행을 해태할 수는 없다. Honnold K.O.,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Fourth Edition)*, Wolters Kluwer, 2009, pp.489-490.

2. 물품수령의무와 관련된 사례분석

(1) FOB 계약에서 매수인이 선박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³⁶⁾

① 사건개요

매수인(피신청인)과 매도인(신청인)은 FOB 조건하에 취소불능 L/C 방식으로 녹두를 거래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의 내용에는 물품검사는 수출국 검사당국의 검사에 이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매도인을 녹두를 선적항으로 운반하고 선적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였다. 부두에서 수출국 검사당국에 의해 물품검사를 진행하였고, 당국에서는 물품이 적합함을 확인하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선적일자가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운송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하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선박지정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 때 매도인은 물품에 대한 SGS(프랑스의 국제적인 검정회사) 검사를 요구하였고, 일주일 후 매수인은 이를 허락하고 SGS검사를 실시하였는데, SGS검사에서는 녹두에 물품 부적합이 발견되었다. 그러자 매수인은 선박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매도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물품에 대한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제3자에게 동 물품을 재매각한 후, 매수인을 상대로 대체거래와의 차액 등 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중재를 신청하게 되었다.

② 판정내용

본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SGS검사는 계약에 없었고, 매도인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출국 검사당국으로부터 품이 적합하다는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매도인은 적법하게 물품검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매수인이 운송선박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결국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에게 매도인의 대체거래와의 차액(계약가격-재매각 가격), 물품보관비, 녹두의 재 훈증 소득비용 및 변호사비용 등 매도인의 제 손해액을 매수인이 배상하도록 판정하였다.

36) CLOUT Case 987 : China: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CISC/2001/02, 22 March 2001.

③ 판결의의

Incoterms상의 FOB 계약조건에서는 매수인에게 주 운송선박을 지정(수배)할 의무가 있으며, 매수인이 그러한 자신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제60조상의 매도인의 인도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는 결국 매도인의 인도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므로 매수인은 본질적인 계약위반을 범한 것이다. 국제물품매매에서 간혹 매수인이 선적항에서 선박수배가 힘든 상황에서도 FOB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운송계약체결 조건부로 FOB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장기간 거래에서 품질하락을 이유로 물품수령을 거부한 경우³⁷⁾

① 사건개요

영국의 매수인(피신청인)은 네덜란드의 매도인(신청인)으로부터 원유혼합 응축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12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년간은 별다른 문제없이 거래가 되었으나, 응축물에 함유된 수은의 양이 증가하자 매수인은 1998년 6월 11일에 다음 인도분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매도인에게 통지하였다. 수은 함유량이 높아지면 제조나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1998년 6월 16일에 물품이 도착하자, 매도인은 수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물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물품수령을 거절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동 물품을 제3자에게 재매각하고 대체거래와의 차액을 배상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2000년 5월 네덜란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심문과정에서 매도인은 계약체결시 구체적인 품질조건에 관하여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② 판정내용

중재판정부는 수은 함유량 등 구체적인 품질기준에 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동 사건에서의 품질기준을 제35조상의 통상목적적합성 기준, 판매적격 품질조건 및 평균중등품질조건 등을 검토하였으나, 결론은 합리적인 품질표준(reasonable quality norm)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본

37) CLOUT Case 720 : The Netherlands: Nederlands Arbitrage Instituut/Netherlands arbitration Institute (NAI), Case No. 2319, 15 October 2002.

사건에서의 매도인이 인도 물품에 대한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한 것은 CISG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장래 분할분에 대하여 자신의 물품수령의무를 정지하는 것은 제71조(이행정지권)에 의거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인도분에 대한 물품수령 거절은 제71조 3항에 따른 이행정지권 행사의 즉각적인 통지의무에 위배되므로, 매도인에게 손해를 배상토록 판정하였다.

③ 판결의의

매우 미묘한 사안이지만, 매도인의 6월 인도분은 정상적인 인도로 보면서, 그 이후 장래의 분할분에 대해서 매수인의 수령거절(계약의 해제를 인정)을 인정한 것은 타협적인 중재안이라고 본다. 이는 6월 이후 매도인도 인도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의 무효를 인정한 것이며, 6월 인도분도 매수인의 기대하는 바를 어느 정도 박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는 지의 여부는 아주 모호하므로, 본 타협적 판정은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3) 선적지연을 사유로 물품수령을 거부한 경우³⁸⁾

① 사건개요

중국의 매수인(신청인)은 1995년 12월 한국의 매도인(피신청인)으로부터 hot coil을 수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금은 L/C도 대금지급하고 선적기일은 12월 10일로 약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L/C가 개설된 후, 매도인은 선적기일을 12월 23일로 연기토록 L/C 조건변경을 매수인에게 요청하였다. 매수인은 12월 20일까지는 연기해 줄 수 있다고 매도인에게 통지하였다. 매도인은 12월 20일 Jeon Fin호에 선적을 하였고, 매수인에게 그 사실을 12월 25일에 통지하였다. 운송 선박은 1996년 1월 13일에 도착하였는데, 그 선박명은 Jeon Jin호였다. 본선이 도착한 후 매수인은 매도인이 지연된 선적을 하였고, B/L, C/O 등 서류상에 기재된 선박명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물품을 수령하지 않고 계속하여 가격의 할인을 요구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가격할인 요구를

38) CLOUT Case 715 :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15 December 1997.

거절하고 Jeon Jin호에게 출항(물품인도거부)을 지시하였다. Jeon Jin호가 출항하여 물품수령을 할 수 없게 된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국내 고객에게 재판매하여 취득할 이익 및 국내 고객에게 지불할 벌과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

② 판정내용

중재심문과정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12월 20일에 선적을 이행하였으므로 제18조 3항 상의 행위에 의한 승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중재판정부는 중국은 CISG에 서명할 때 제96조(국내법상의 서면조건 유보)를 유보하였으므로 서면 통지가 필요하며, 그 통지가 선적 후 5일 후에 이행된 것은 변경된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매도인은 오기된 선명을 수정하여 매수인에게 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매수인에 대하여도, 중재판정부는 L/C 조건변경에 동의하고도 변경된 L/C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또한 도착항에서 물품수령을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으면서, 가격할인만을 요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중재판정부는 양당사자의 쌍방과실이라고 보고, 양 당사자 각자 자기의 손해를 책임지라고 판정하였다. 결국 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었다.

③ 판결의의

얼핏 보면, 매수인이 선적지연 및 선명불일치 서류의 제공 등을 문제 삼아 가격할인을 요구하는 악행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한국의 매도인도 신속한 선적통지를 못한 과실, 인도기일 후 서류하자의 보완을 해태한 책임 및 도착항에서 매수인의 물품수령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본 사건에서의 중국국제경제무역위원회의 판정을 타당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한국의 매도인이 선적기일을 너무 촉박하게 설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분쟁을 유발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여겨진다.

(4) L/C 개설 및 물품수령을 거부한 경우³⁹⁾

① 사건개요

스위스의 매수인(피신청인)은 중국의 매도인(신청인) 몰리브텐을 수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금지급방식은 L/C로 합의되었지만, 계약체결후 매수인은 매도인의 물품검사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정시에 이행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L/C를 개설하지 않았다. 물품이 인도된 후에도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하자, 매도인은 제3자에게 물품을 재매각 하였다고 대체거래와의 차액 등 매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

② 판정내용

중재심문과정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정시에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발송한 선적요청서상의 선적일자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국제시세가 하락하자 의도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매수인은 매도인이 손해경감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이 적기에 재매각하여 매수인의 손해를 경감시켰다고 보았다. 결국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을 범한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③ 판결의의

국제물품매에서 계약체결후 물품의 시세가 하락하면, 종종 매수인은 물품수령을 거부하기 위한 트집을 잡기도 하는데, 본 사건이 그러한 부류에 해당된다. 계약체결후 시세가 폭락하더라도 제79하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제받는 데에는 절대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일단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시세가 하락하더라도, 계약의 내용대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그나마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임을 유념하여야 한다.

39) CLOUT Case 714 :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Shanghai Commission, 30 April 1997.

(5) 부가기간에도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⁴⁰⁾

① 사건개요

스위스의 매수인(피고)은 독일의 매도인(원고)으로부터 마취제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물품수령기간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매수인은 물품수령기간 및 그 이후에 매도인이 설정한 부가기간에도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동 물품의 시장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제3자에게 동 물품을 재매각하고 대체거래와의 차액 및 미지급한 물품대금의 이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스위스법원에 제기하였다.

② 판결내용

본 사건에서 스위스 법원은 매수인이 제64조 1항 b호에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이 지정한 부가기간내에 물품의 수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매수인은 제60조 b호에서 규정한 물품수령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는 매수인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범하였다고 밝히면서, 매수인은 대체거래와의 차액 및 연체된 대금에 대한 이자⁴¹⁾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③ 판결의의

판례를 살펴보면, 매수인이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는 대부분 계약체결후 당해 물품의 시장가격이 하락한 경우이다. 그러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에 관하여 꼬투리를 잡고 가격할인을 요구하기 마련인데, 그러한 매도인의 의무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상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 매수인이 자신의 물품수령의무 위반에 기인한 본질적 계약위반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매수인은 시세가 하락하더라도 적법하게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40) CLOUT Case 629 : Switzerland: Kantonsgericht Zug, A3 2001 34, 12 December 2002.

41) CISG에서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자율은 적용가능한 국내법에 따르게 된다.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그 이자율은 통상 채권자 국가의 법에 따르도록 판결되고 있다. 본 사건에서의 채권자는 매도인이므로 매도인 국가인 독일법에 따라 그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스위스법원이 판결한 것으로 보여 진다.

IV. 결 론

본고에서는 매수인의 주된 의무인 대금지급(조치)의무 및 물품수령 의무를 중심으로 매수인의 본질적 계약위반 기준을 분석하였다.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의무 위반과 관련된 사례 연구를 요약하면,

① 정당한 사유 없이 L/C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매수인의 본질적인 계약위반을 구성한다. 직접 연관성이 없는 정부의 수입제한을 사유로 또는 시황변동을 사유로 혹은 경영진이 교체되었다는 사유로 L/C개설을 거부하는 것은 매수인의 본질적인 계약위반이 된다.

② B/L 등 매도인이 제공한 서류에 부적합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소멸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를 사유로 대금지급을 계속 거절하면 이는 매수인의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된다. 즉 물품을 수령하였으면 대금지급의무라는 쌍무적 의무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③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 등의 사소한 부적합을 사유로 또는 다른 비본질적인 문제를 사유로 매수인이 물품대금의 지급 거절할 수는 없다. 전자의 경우에는 대금감액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며, 후자의 경우에도 대금지급의무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다. 물론 분할지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없다.

④ 매수인이 L/C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내용이 당해 계약의 본질을 심하게 훼손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매수인의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상당하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L/C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의 물품수령의무 위반과 관련된 사례 연구를 요약하면,

① 계약상 매수인이 선박을 지정해야하는 경우, 매수인이 선박지정을 고의적으로 지체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매수인의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된다.

② 물품의 품질부적합 또는 수량부적합을 사유로 매수인은 도착지에서 물품수령을 거절할 수는 없다. 일단 물품을 수량한 후 검정보고서를 근거로 그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이 지연된 선적을 하였다고 하여, 매수인이 당해 물품의 수령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지연된 선적 즉 물품의 인도기일 자체

가 계약의 본질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의 내용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더라도 물품을 수령, 보관하면서 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다. 지연된 선적이 있었다고 하여 물품수령 자체를 거절하는 것은 매수인의 계약위반이 된다.

④ 매수인이 물품수령을 거부한 것 그 사실만으로 무조건 매수인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을 범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수령을 독촉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계속 수령거절 의사를 표한다면, 이는 매수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것이다.

매수인은 종종 매도인이 제공한 물품에 부족함이 있거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물품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대금지급을 거절해도 무방한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도된 물품은 비록 계약에 부적합하더라도 수령하고 보존할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이 일단 물품을 제공하였다면, 반드시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에도 유념하여야 한다. 덧붙여 계약에서 합의한 L/C 개설을 거절하거나 선박수배를 거부하는 것도 매수인의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매수인의 본질적인 계약위반의 상황은 다양한 형태로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므로, 앞으로도 계속 각국 법원이나 중재판정부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Honnold J.O.저 (오원석 역), UN통일매매법, 삼영사, 2004
-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경제연구」, 제23집 제2호, 한양대학교, 2006
- 오석웅, “CISG에 있어서 본질적 계약위반과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무역연구」, 제6권 제4호, 한국무역연구원, 2010
- 홍성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본질적 계약위반의 효과”, 「무역연구」, 제6권 제4호, 한국무역연구원, 2010
- 하강헌. “근본적 계약위반조항의 적용사례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1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3
- , “CISG하의 매수인의 계약해제 사례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2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
-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이행기전의 계약해제에 관한 고찰”, 「국제거래법연구」, 제7집, 국제거래법학회, 1998
- , “국제물품매매에서 이행기전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권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이행정지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23권 2호, 한국무역학회, 1998
-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대금지급장소조항의 적용사례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4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
-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근본적 계약위반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1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8
- Bonell M J., *The Unidroit Principles in Practice*,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2002
- Ferrari F., Flenchtner H., Brand R. A., *The Draft UNCITRAL Digest & Beyond : cases & unresolved issues in the U.N. Sales Convention*, European Law Publishers, 2004,
- Flechtner H. M., Brand R. A., Walter M. S., *Drafting Contracts Under the*

CISG,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Goode R., *Transnational Commerci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Honnold K.O.,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Fourth Edition)*, Wolters Kluwer, 2009

Kröll S., Mistelis L., Viscasillas p. P.,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C.H.Beck· Hart·Nomos, 2011

Schleschtriem P., Schweng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Seco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Schwenger I., Fountoulakis C., *International Sales Law*, Routledge –Cavendish, 2007

Schweng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3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Vogenauer S., Kleinheisterkamp, J., *Commentary on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PICC) II*,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04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Case Law on UNCITRAL Texts (CLOUT) Case 976, 986, 631, 864, 826, 716, 630, 983, 578, 987, 720, 715, 714, 629

ABSTRACT

A Study on the Recent Cases of Buyer's Fundamental Breach

Ha, Kang Hun

Referring to Buyer's obligations,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for the goods and take delivery of them as required by the contract. There are vital importances to the Buyer's Fundamental Breach. The legal effects of a breach of contract do not depend on the nature of the obligation broken, but on the consequences of the breach the detriment to the other party. The obligations mentioned to Article 53 are primary obligations which are to be fulfilled in the normal performance of the contract. They include a number of different acts which could be seen as the subject-matter of different obligations. CISG gives further details for the payment of the price in Articles 54 to 59 and for taking delivery in Article 60. The buyer has to take delivery at the respective place within a reasonable period after this communication since he cannot be required to take delivery immediately. Refusing to take delivery in case of delay not constituting a ground for avoiding the contract makes no sense, since this would lead to even later delivery. For the understanding of Buyer's Fundamental Breach, We need to search the Cases referring to the breach of buyer's main obligations.

Key Words : Buyer's obligations, Paying the Price, Taking delivery of Goods, Buyer's Fundamental Breach, Seller's avoiding the contract.
--